

III. 포상의 대상 및 기준

1 포상의 대상

□ 개인

○ 공무원 : 道 및 시·군 소속 공무원

※ 道 내 광역기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포함(단, 부상품 수여 금지)

※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소속된 기관에 “단체표창” 가능

○ 민간인 : 경기도민 및 경기도에 공을 세운 타 시·도민, 타 기관 소속 공무원(경찰, 교사, 군인 등), 청원경찰, 공무원직

□ 기관 및 단체

○ 기관 : 道 소속 지방자치단체(시군)

○ 단체 : 道 산하 공공기관, 민간단체(협회) 및 외국단체 등

2 표창의 기준

□ 공무원 표창

○ 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: 추천기준일¹⁾ 기준

- 포상의 성격·규모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실근무기간을 1~3년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며 해당업무 담당기간 등 자격요건 추가 가능

- 제외기간 : ①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②임용 후 입대휴직, ③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④실무수습 기간

○ 도지사 이상²⁾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자 : 추천기준일 기준

- 동 회차 공적심사위원회에 중복으로 추천된 경우 또는 심사 시 타 표창 선발 확정된 경우도 재포상 금지에 포함

○ 정부포상(국무총리 이상)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포상 금지

○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자, 제안 제도에 따른 표창, 모범공무원 분야 등은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적용 제외

1) 추천기준일 : 표창 계획 수립 시 명시한 추천 기준일 또는 명시한 추천일 없을 시 시·군 등 추천권자가 道로 추천한 날

2) 도지사 이상 표창 : 각 부처 장·차관급, 경찰청장(중앙○, 지방×), 소방총감, 광역자치단체장, 검찰총장, 도의장, 교육감 등

□ 민간인 표창

1) 공적기간 (개인 및 기관단체 공통)

○ <유공> 고유의 업적에 의한 표창 선정 시 2년 이상 (추천일 기준)³⁾

- 도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, 공적기간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(예: 불을 끈 용감한 도민 등)
☞ 예외적으로 특수공적사유서 첨부 및 공적기간 단축 가능(단, 특수공적 남발 금지)
 - 대상자 선정 보고 시, 공적개요서·명단 등 심사 자료에 표시
- 도정시책 유공 시 道 사업추진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, 해당 분야에 공적이 연결되는 기간은 모두 인정

○ <평가> 연간 평가 등에 의한 표창 선정 시 : 평가 기간으로 산정

- 법령·조례·계획에 의한 각종 제도 연간 평가* 관련 유공 시 평가 기간으로 공적기간 산정
- 선정기준 및 검토결과 내용이 명시된 평가계획 및 선정 보고(결재문) 공적심사의뢰서 첨부 必
 - ※ '연간 평가' 자체가 고유 업무인 경우에 한함 * 예: 제언제도 유공자 표창(2025년 우수 시군, 개인) 등

2) 재포상 금지 (추천기준일 기준)

○ <개인> 도지사 이상⁴⁾ 표창 수여 후 2년이 지난 자

- 공적분야가 다른 경우에도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2년이 지나야 함 (동일한 공적에 국한하지 않음)
- 다만, 계획·법령에 의한 평가*결과 우수자 및 의인** 등에 대하여 표창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
 - ※ '평가' 자체가 고유 업무인 경우에 한함 * 예: BSC 우수 시군 표창 등 / ** 인명구조 혹은 재산보호 공 현저
- 위 경우 표창계획서에 평가기준, 평가방법, 법령 등 명시 또는 별도 평가계획 수립 제출 / 인명구조 등 실적 제출

○ <기관 및 단체> 동일한 분야로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기관 및 단체

- 기관 및 단체의 경우 동일한 분야에 국한하여 재포상 금지 규정 적용(공적분야가 다른 경우 추천 가능)
(예시) '23 포천복지관 안전우수 유공 - '25 포천복지관 안전우수 유공(x) / '25 포천복지관 경제발전 유공(o)
- 다만, 계획·법령에 의한 우수평가 및 생명·재산 보호 공이 현저한 기관·단체에 대해 표창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
표창계획서에 평가기준, 평가방법, 법령 등 명시 또는 별도 평가계획 수립 제출 / 인명구조 등 실적 제출
 - ※ '평가' 자체가 고유 업무인 경우에 한함

◇ 표창기준 요약정리

기 준	공적기간 2년 이상	재포상 금지
예외적용	도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, 공적기간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※ (제출) 특수공적사유서	계획 또는 법령에 의한 평가일 경우 ※(제출) 표창계획서에 평가기준 등 명시 또는 별도 제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
	연간 평가 등에 의한 표창의 경우 ※ (제출) 연간평가계획 및 선정보고 결재문	

3) 추천기준일 : 표창 계획 수립 시 명시한 추천 기준일 또는 명시한 추천일 없을 시 시군 등 추천권자가 道로 추천한 날

4) 도지사 이상 표창 : 각 부처 장·차관급, 경찰청장(중앙○, 지방x), 소방총감, 광역자치단체장, 검찰총장, 도의장, 교육감 등

5) 동일한 분야 : 포상내용 및 선정부서(중앙부처)가 동일할 경우에 해당

3

표창 제외 대상

< 공통 >

-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-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
※ 말소기간 :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, 정직 7년, 감봉 5년, 견책 3년, 직위해제 2년, 불문경고 1년 등
- 주요비위*로 인한 징계·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
*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,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암절도사가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음주운전, 재산 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
- 기타 공·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, 부조리 등으로 물의(민원)를 일으켜 도지사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※ 단,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,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
-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공무원·민간인 포상 제외 대상 참조

< 공무원 >

- 현 소속기관 6개월 미만 근무자 ※ 소속기관 : 부서 단위가 아닌 소속 자치단체
-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(타 기관 공무원 포함)

< 민간인, 기관단체 > ※ 제한기간 규정 등은 정부포상 업무지침(행정안전부)에 따름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및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 (기관장)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
-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, 「공정거래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
※ 도지사 표창은 범죄경력조회 불가,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확인 철저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4

포상 추천권자

구분	道 본청	道 직속기관 (산하기관포함)	道 3급이상 사업소	道 4급이하 사업소	시·군	타기관 공무원 경우
추천권자	실·국·본부장	원장·본부장	사업소장	관할 실·국장	시장·군수	소속기관장
공적내용 조사자	소속부서장	소속부서장	소속부서장	소속부서장	(민간인) 소속부서장 (공무원) 인사부서장	소속부서장